# One Source for Four Groups 장애인 통계 생산 확대

수행과제명 :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과제책임자 : 전기택 연구위원 Tel : 02-3156-7178, e-mail : junkt@kwdimail.re.kr

#### 이 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여성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주는 장애인통계 생산을 위해 향후 장애인통계 정책 방향을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One Source for Four Groups)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성장애인 정책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여성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지위와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성장애인 통계 및 지표의 구축이 선행될필요가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여성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여성장애인 통계의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함.

첫째,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통계의 정책방향을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One Source for Four Groups)'로 설정함. 현재의 장애인 통계는 남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어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어렵고,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향후 장애인통계는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을 직접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승인통계의 장애상태 작성을 의무화함. 이중차별, 다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승인통계 작성시 성별, 장애상태의 동시 작성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회분야 통계를 포함한 모든 국가승인통계 작성 항목에 성별과 장애상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승인통계 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함.

셋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장애상태 문항 추가, 『사회조사』의 장애상태 문항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 비장애인 추가 등을 통해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국가승인 통계 생산을 확대함.

넷째, 국가승인통계의 장애측정 도구를 표준화함. 모든 국가승인통계의 장애 측정 도구와 적용 방법을 표준화하여 동일한 장애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양한 분야의 통계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비교통계를 생산함.

# 3. 정책효과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의 생산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가능함.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를 통해 여성장애 인과 여성비장애인, 남성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인 격차를 다 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둘째, 여성장애인 정책 추진 시 준거기준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 및 평가에서 여성장애인의 정책 수혜도와 지위 개선 목표를 남성장애인, 여성비장애인, 남성비장애인 등 3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정교화하에 기여함.

▶ 주관부처 : 통계청(통계정책과, 사회통계기획과, 고용통계과)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